

1. 개정이유

유통주체 간 경쟁 강화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401호 ‘26. 8. 28. 시행)됨에 따라,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설자가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 추가
(안 제16조제1항 개정)

- 도매시장법인 지정 절차,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절차 및 세부 기준, 정가·수의매매 전담 인력 운용 규모 등에 관한 사항

나. 정가·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규모, 기준 등 구체화(안 제28조의2 신설)

- 전담인력은 경매사를 포함하여 1명 이상으로 하되, 세부기준은 법인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함
-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 범위* 및 자격 기준 규정 신설
 - * ▲출하처 및 수요처 개발, ▲출하(구매) 물량 및 단가 협의, ▲입하 물품의 거래 등
 - ** 경매사, 농수산물품질관리사,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자 등

다.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공시방법 및 시한 규정
(안 제34조의2 신설)

- (방법) 해당 도매시장이 개설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
- (시한) ①위탁수수료율 변경 시 즉시 공시, ②주주 및 임원 현황 변동은 15일 내에 공시

라.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물량 반입 시 시장사용료 부과 규정 신설(안 제39조제2항제3호 신설)

- 「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온라인 도매 거래 농수산물의 반입·하역 및 분류를 위하여 별도로 구분·운영하는 집하장, 하역장 등 반입 전용 공간에 대한 사용료 부과

마. 위탁수수료의 조정 권고 절차 및 기준 신설(안 제39조의2 신설)

- 해당연도 영업이익률이 최근 5개년 영업이익률과 대비하여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조정 권고
 - 단, 조정 기준* 및 권고 비율 등 세부 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
- * 조정기간과 관련해서는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중(~5월말)
-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되, 권고 30일 이내 권고 사항 이행
- * 행정절차법 제48조~제50조의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

바. 도매시장법인(공판장 포함) 또는 시장도매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 신설(안 제52조의2 신설)

- 평가 결과 통보 시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장관 대상으로 이의신청
- 이의신청 받은 장관은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30일 이내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

사. 도매시장법인(공판장 포함)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 취소 기준 근거 구체화(안 제52조의3 개정)

-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 취소 기준 평가 결과 반영 기간을 ‘최근 5년’에서 ‘장관이 정하는 기간’으로 변경

* 재지정 시 기존 부진 등급 부여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 도매법인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⇨
(안) ① '27년 이후 5년 단위로 설정, ② 해당 시장 법인 지정 기간과 일치 등

○ “부진” 등급의 개념을 운영실적 평가 하위 10%로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와 협의 중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제5호의 “제23조에”를 “제23조제1항에”로 하고 “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”을 “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제5호의2, 제16조제1항제1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법 제24조 제7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절차 및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

12의2.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전담 인력 운용 규모 등에 관한 사항

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(전담인력)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전담인력의 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를 포함한 1명 이상으로 하되, 도매시장법인별 연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세부 기준을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다만, 제4

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법 제27조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가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출하처 및 수요처 개발
2. 출하처와의 출하 물량 및 단가 협의
3. 중도매인과의 구매 물량 및 단가 협의
4. 입하된 물품의 거래(매매)
5. 그 밖에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는 업무

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선발할 수 있다.

1. 법 제27조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
2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107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
3. 제2항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거나 경매·농산물 마케팅 및 품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기준 이상의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) ① 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시

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가 개설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.

② 위탁수수료율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즉시 변동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

③ 주주 및 임원의 현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15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

제3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며,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(중도매인 점포·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)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. 다만,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

3. 「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온라인도매거래 농수산물의 반입·하역 및 분류를 위하여 별도로 구분·운영하는 집하장, 하역장 등 반입 전용 공간

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의2(위탁 수수료의 조정 권고의 절차 및 기준)

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1.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연도 평균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과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증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.

2. 그 밖에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출하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권고의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49조, 제50조,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를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조정기준 및 위탁수수료 조정 요청 비율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2조의2(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) ①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도매시장법인 등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.

제52조의2를 제52조의3으로 하고 제1항의 “취소할 수 있다.”를 “취소하여야 한다.”로, 제2항의 “최근 5년간”을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

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”로, “취소할 수 있다”를 “취소하여야 한다”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“부진”이란 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 운영 실적 평가 평가 등급이 하위 10%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④ 그 밖에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업무규정)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6조(업무규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법 제23조</u> 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, 임원의 자격, 자본금, 거래규모, 순자산액 비율,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<u>관한</u> 사항	5. <u>법 제23조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관한 사항</u> <u>및 지정절차에 관한</u> -----
<u><신 설></u>	5의2. <u>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절차 및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</u>
6. ~ 12. (생략)	6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2의2. <u>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규모 등에 관한 사항</u>
13. ~ 37. (생략)	13. ~ 3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28조의2(전담인력)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</u>

이 확보하여야 하는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전담인력의 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를 포함한 1명 이상으로 하 되, 도매시장법인별 연간 거래 물량 등을 고려하여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세부 기준을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법 제27조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가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출하처 및 수요처 개발
2. 출하처와의 출하 물량 및 단가 협의
3. 중도매인과의 구매 물량 및 단가 협의
4. 입하된 물품의 거래(매매)
5. 그 밖에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는 업무

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선발

제34조의2(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) ①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거래일자별 · 품목별 반입량

할 수 있다.

1. 법 제27조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

2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107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

3. 제2항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거나 경매·농산물 마케팅 및 품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기준 이상의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제34조의2(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) ① 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가 개설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.

및 가격정보

2.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

3. 경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

4.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

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
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39조(사용료 및 수수료 등) ①
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. 다만,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.

1. 2. (생략)

<신 설>

② 위탁수수료율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즉시 변동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

③ 주주 및 임원의 현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15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

제39조(사용료 및 수수료 등) ①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「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
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
② ~ ⑧ (생 략)

<신 설>

온라인도매거래 농수산물의
반입·하역 및 분류를 위하여
별도로 구분·운영하는 집하장,
하역장 등 반입 전용 공간
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39조의2(위탁 수수료의 조정 권

고의 절차 및 기준) ① 법 제42
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
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
다음 각 호의 경우 도매시장법
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영에
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
범위 내에서 도매시장법인 또는
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의
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1.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
인의 해당연도 평균영업이익
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영업이
익률과 대비하여 농림축산식
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
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
증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
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
인정되는 경우.

2. 그 밖에 시장의 건전한 유통
질서 확립과 출하자 권익 증

<신 설>

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권고의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49조, 제50조,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를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조정기준 및 위탁수수료 조정 요청 비율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52조의2(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) ①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도매시장법인 등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제52조의2(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 등) ①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②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근 5년간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<신설>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.

제52조의3(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 등) ① -----

----- 취소하여야 한다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 -
----- 취소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“부진”이란 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 운영 실적 평가 평가 등급이 하위 10%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<신 설>

④ 그 밖에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